

부산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가단3063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D

변론 종결2022. 6. 24.

판결 선고2022. 9.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21. 9.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E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9. 24. 접수 제12297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3056호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9. 15. "E은 원고 A에게 92,581,321원, 원고 B에게 51,054,214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선행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2. 8. 24. 확정되었다.

나. E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E의 재산 상태

1) E은 2021. 9.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시 E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선행판결금채무를 변제할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선행판결이 선고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선행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또한, 실제로

선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가액배상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가액배상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은 E이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은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약 9,500만 원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E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약 9,5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민석

별지